
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5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5. 18) 상정
-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5. 18) 원안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박 상 설)

가. 제안이유

- 부천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32회 정기회의(2009. 2. 25. 개최)시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, 양천구청장을 협의회 구성 위원으로 추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,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및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양천구청장을 구성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함.
(안 규약 제3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서울시 구로구 등 다른 자치단체 참여 확대 계획은?</p>	<p>○ 협의회에 참여하는 단체장들의 결정사항이나 향후 참여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며, 구로구의 경우 과거 참여를 하였다가 탈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

의안 번호	제406호
의결 년월일	2009. 5. 21. (제152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5. 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부천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32회 정기회의(2009. 2. 25. 개최)시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, 양천구청장을 협의회 구성 위원으로 추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,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및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양천구청장을 구성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함.(안 규약 제3조)
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
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부천시·광명시·시흥시·김포시·인천광역시 계양구·부평구·서구·강화군·서울특별시 강서구”를 “경기도 부천시·광명시·시흥시·김포시, 인천광역시 계양구·부평구·서구·강화군, 서울특별시 강서구·양천구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부천시·광명시·시흥시·김포시장, 인천광역시 계양구·부평구·서구청장, 강화군수,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”을 “경기도 부천시시장·광명시장·시흥시장·김포시장,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·부평구청장·서구청장·강화군수,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·양천구청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<u>부천시 · 광명시 · 시흥시 · 김포시 · 인천광역시</u> <u>계양구 · 부평구 · 서구 · 강화군 · 서울특별시 강서구</u>로 한다.</p> <p>② 위원은 <u>부천시 · 광명시 · 시흥시 · 김포시장, 인천광역시 계양구 · 부평구 · 서구청장, 강화군수,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</u>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구성) ①----- ----- <u>경기도 부천시 · 광명시 · 시흥시 · 김포시, 인천광역시 계양구 · 부평구 · 서구 · 강화군, 서울특별시 강서구 · 양천구</u>로 한다.</p> <p>② -- <u>경기도 부천시장 · 광명시장 · 시흥시장 · 김포시장,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· 부평구청장 · 서구청장 · 강화군수,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· 양천구청장</u>으로 한다.</p>